

2024년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(Pre-TIPS / Post-TIPS)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

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2024년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(Pre-TIPS/Post-TIPS)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9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※ 본 모집공고는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기업(프리팁스(지역트랙))이거나
팁스를 통해 검증된(완료(성공) 판정) 기업(포스트팁스)을 위한 모집공고로,
최종 선정 후 협약을 통해 프리팁스(10개월), 포스트팁스(18개월)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.

□ **사업목적** : 창업기획자 및 벤처캐피탈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
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
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

□ **선정규모** : 프리팁스(지역트랙) 30개사 내외, 포스트팁스 83개사 내외

세부사업명		지원대상	협약 기간	지원금	기업 부담금	신청·접수		선정 평가
프리 팁스 (Pre- TIPS)	지역 트랙	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비수도권 소재 초기창업기업(창업 후 3년 이내)	10 개월	최대 1억원 (평균 84백만원)	총 사업비의 30% 이상	1차	3.19~4.11	4~5월
						2차	6.3~6.27	7~8월
	시드 트랙	시드 운영사의 배치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창업팀 또는 초기창업기업(창업 후 3년 이내)	6개월	평균 5천만원		추후 별도 모집 예정		
포스트팁스 (Post-TIPS)		팁스 R&D '완료(성공)'판정을 받은 창업기업(창업 후 7년 이내*)	18 개월	최대 5억원 (평균 3.3억원)		1차	3.19~4.11	4~5월
						2차	6.3~6.27	7~8월

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 기업까지 지원 가능

** 접수, 평가, 선정 등 추진일정 및 규모 등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
K-스타트업 홈페이지(www.k-startup.go.kr) 등을 통해 공지 예정

(1) 프리팁스(Pre-TIPS) - 지역트랙

- ※ 프리팁스(Pre-TIPS)는 지역트랙과 시드트랙으로 구분되며,
본 공고는 “지역트랙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대상이므로 시드트랙과 혼동하지
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* (시드트랙) 시드 운영사의 배치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창업팀 또는 초기창업기업이 대상이며,
별도 모집 예정

1

사업개요

- ☐ **사업목적** :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(Seed)를 유치한 초기창업기업을
발굴하여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팁스(TIPS) 창업기업으로 육성
- * 전체 지원규모를 지방소재 창업기업(법인등기부등본 및 현장실사 통해 확인)으로
선발하여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내 우수 기술창업 인재를 발굴

- ☐ **지원대상** :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비수도권
(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 소재 초기창업기업(창업 후 3년 이내)
- * 신청자격은 동 공고 '2. 신청자격 및 요건' 참조

- ☐ **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(평균 84백만원)
- * 사업화자금(정부지원사업비)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

< 지원 내용 >

지원기간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
		현금	현물
10개월	최대 1억원 (총 사업비의 70% 이하)	총 사업비의 30% 이상	
		10% 이상	20% 이하

- ☐ **협약기간** :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
- ☐ **선정규모** : 30개사 내외

□ 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,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중, 아래의 요건①~③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< 신청 자격 세부 조건 >

- '사업을 개시한 날' 기준
 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 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-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(**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**)
 - *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(개인, 법인)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업력, 지분구조 등 창업기업 여부 확인 추가 진행될 수 있음
-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서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검토 예정

- **요건①** :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

- * 모집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
- ** 협약체결일 기준 근로자 2인 미만인 경우 협약 이후에도 제재될 수 있음

- **요건②** :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 유치 (투자확약 불인정, 투자계약 후 주금 납입 및 등기완료 必)

< 투자자의 종류 >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창업기획자(중소벤처기업부 등록) |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탈(LLC 등 포함) |
| ③ 기업형(중소·벤처기업 및 중견·대기업 등) | ④ 글로벌 투자·보육 전문기관* |
| ⑤ 기타(기술지주사,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) | ⑥ 개인투자조합** |

- *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(지사 등)이 있으며, 국내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 한하여 인정
- **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

- **요건③** : 비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에 소재한 기업

- *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소재지(본사)로 구분, 현장실사 시 확인

□ 신청 제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(기업)

< ① 조건 예외 대상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(기업)

< ② 조건 예외 대상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 ([붙임 2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

④ 중소벤처기업부 '팁스R&D' 또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'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
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*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 「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'사업화' 및 '글로벌'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([붙임 3] 참조)

** 동일년도 2개 이상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되는 경우, 각 사업의 협약 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

*** 단, 2024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
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(기업)

⑥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 (기업)

⑦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 (기업)

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
⑧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
⑨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(기업)

⑩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(기업)

⑪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(기업)

□ 지원내용

○ 사업화자금 : 정부지원사업비 최대 1억원(평균 84백만원) 지원

- 사업화자금(정부지원사업비)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며, 사업수행(협약)기간은 **협약일로부터 10개월**

<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 (정부지원사업비 7,000만원인 경우) >

총 사업비 (예시)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
		현금	현물
100%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10% 이상	총사업비의 20% 이하
1억원 (100%)	7,000만원 (70%)	1,000만원 (10%)	2,000만원 (20%)

* 총 사업비 = 정부지원사업비 70% 이하 + 자기부담사업비 30% 이상

** 자기부담사업비 (30% 이상) : 현금 10% 이상 + 현물 20% 이하

**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

< 사업화 자금 비목 >

비 목	비목 정의
재료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
외주용역비	•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기계장치 (공구·기구, 비품, SW 등)	•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비용
인건비	•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(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) * 창업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
지급 수수료	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기자재임차비,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)
여비	•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
교육훈련비	•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
광고선전비	•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
4

신청 및 접수

□ 신청·접수 기간

- 1차 : 2024. 3. 19.(화) ~ 4. 11.(목), 16:00까지
- 2차 : 2024. 6. 3.(월) ~ 6. 27.(목), 16:00까지

*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, 2차 신청·접수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

< 유의 사항 >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누리집' 가입 및 사업 신청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(“제출완료”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)
 - * 신청·접수는 **16:00 정각에 종료**(신규 신청 불가). 다만, 16:00 전에 1단계(약관동의)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, 18: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
- ② **‘제출완료’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**
- ③ **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**하고, 신청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 및 삭제 불가

□ 신청방법

-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·접수 (www.k-startup.go.kr)
 - 신청·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**실명인증** 및 ②**기업인증**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
 - * **실명인증**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,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)
 - ** **기업인증** : 공동인증서(기업용), 금융인증서, SCI기업실명인증,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
 - ***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www.k-startup.go.kr → 고객센터 → 온라인 매뉴얼 → 창업사업 매뉴얼 → ‘(창업자)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’에서 확인 가능

□ 제출서류

- 사업계획서 1부 ([별첨 1] 양식)

*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(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
○ 기타 제출서류 각 1부

< 제출서류 목록 >

제출서류	유의사항	제출방식
① (양식1) 사업계획서	PDF 형태 첨부	온라인시스템(K-startup) 업로드 ※사업계획서 외 다른 서류는 '회사명.zip' 으로 압축 후 제출
② (양식2) 신청 기본사항	온라인 입력	
③ (양식3) 참가신청서		
④ (양식4) 개인정보 제공·이용·수집동의		
⑤ 투자계약서·투자금 납입내역		
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PDF	
⑦ 투자사실확인서		
⑧ 청렴서약서		
⑨ 주주명부		
⑩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명부		
⑪ 비수도권 소재 협약서		
⑫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	창업기업 여부 확인용 (PDF)	
⑬ 사업자등록증명원(신청기업 외 다른 '계속'사업자 보유 시)		
⑭ 휴·폐업사업사실증명원(휴·폐업사업자 보유 시)		
⑮ 기타 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	가점 해당시 첨부(PDF)	* 제출서류의 용량 합계는 최대 20MB 초과 불가

* 사업계획서 양식 : "[별첨1] 프리팁스 사업계획서 서식" 참조

**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하며,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

***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기존에 발급받은 '창업기업 확인서' 보유 시 해당 서류로 확인 대체 가능(단, 사업공고일 기준 확인서 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어야 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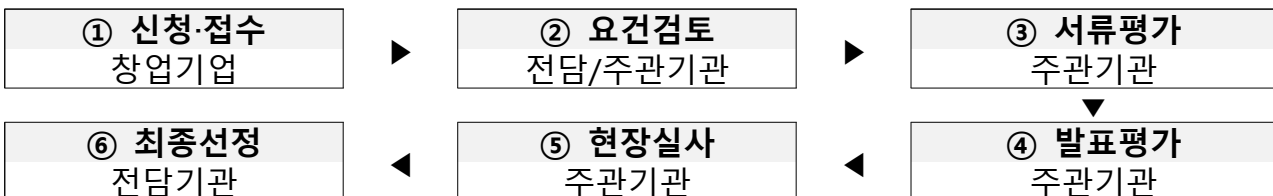
5

평가 및 선정

□ **평가 절차** : 총 4단계 평가(요건검토 → 서류 → 발표 → 현장실사)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, 각 평가는 허들식 평가로 진행

*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,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

<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(안) >



신청기업의 요건검토, 사업계획서 유사·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 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·협약 취소 처리 예정

* (전담기관) 창업진흥원, (주관기관) 한국엔젤투자협회

** 지원계획 대비 신청기업 규모가 미달 될 경우, 일부 절차 동시 진행될 수 있음

□ 평가 방법

- ① **요건검토**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, 가점 등 검토
 - * 가점은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
- ② **서류평가** : 신청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 문제인식, 해결 방안 및 투자계약 적정성 등을 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
- ③ **발표평가** : 제품·서비스 개발 동기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,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(동 사업 신청자)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,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·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
 - * 지원계획 대비 신청기업 규모가 미달 될 경우, 서류 및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으며, 가점은 발표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종합평점 산정
- ④ **현장실사** :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약 관련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정밀 검토를 위한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추천
 - 가장납입, 허위서류 등 제출자료 내용과 실사결과가 다른 경우,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실시
- ⑤ **최종선정** : 선정규모 내에서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, 정부지원사업비*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
 - *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

□ 평가지표

- 창업 아이템의 제품·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*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다음단계 평가대상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

< 서류·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>

평가항목	세부 내용
문제인식	•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(문제인식), 해결방안(필요성) 등
실행가능성	•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(개선)방법, 경쟁력 확보 방안 등
성장전략	•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, 자금조달 방안 등
팀(기업) 구성	•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(예정인)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

- 전략 기술분야기업,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총 3개 항목에서 각 1점씩, 최대 3점의 발표평가 가점 부여

< 가점 항목 및 점수 >

가점 세부 항목	점수	비고
1) 전략 기술분야(소재·부품·장비, 10대 초격차 분야) [별첨3 참조]	1점	최대 3점
2) 내일채움공제(플러스) 가입 기업	1점	
3) 엔젤투자 징검다리 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한 지역소재 기업	1점	

□ 사업 운영일정

※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

(2) 포스트팁스(Post-TIPS)

1 사업개요

☐ 사업목적

- 팁스(TIPS)를 통해 검증된 팁스 졸업기업 중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정해 본격적인 성장(Scale-up) 집중 지원을 통한 글로벌기업으로 육성

☐ 지원대상

- 팁스 R&D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“완료(성공)” 판정을 받은 창업 후 7년 이내** 창업기업

* 신청자격은 동 공고 '2. 신청자격 및 요건' 참조

*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인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

☐ 지원내용 : 사업화 자금 최대 5억원(평균 3.3억원)

< 지원 내용 >

지원기간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
		현금	현물
18개월	최대 5억원 (총 사업비의 70% 이하)	총 사업비의 30% 이상	
		10% 이상	20% 이하

☐ 협약기간 : 협약시작일로부터 18개월 이내

☐ 선정규모 : 83개사 내외

<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>

연번	기관명	기관설명	선정규모 (개사)
1	한국과학기술연구원	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기관으로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, 스케일업, 글로벌 진출 지원	39
2	한국벤처캐피탈협회	산업별 투자유치지원, 투자연계형 R&D, 벤처확인제도 등의 기업 지원사업 운영	44

□ 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중, 후속투자유치 금액*이 100억원 미만이며, 아래의 요건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

* 후속투자 유치 금액은 팁스 선정이후 유치한 국내·외 투자금액의 합계

< 신청 자격 세부 조건 >

- ‘사업을 개시한 날’ 기준
 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‘개업연월일’ 기준
 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‘회사성립연월일’ 기준
-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**(붙임1)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)**
 - *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(개인, 법인)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‘신청자격’에 해당되고, ‘신청 제외 대상’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○
- 업력, 지분구조 등 창업기업 여부 확인 추가 진행될 수 있음
-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서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검토 예정
- ※ (참고사항) 단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

- *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 : 「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」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4-2호) [별표1]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
 - 신산업 창업 분야 여부는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, 최종선정 과정 등에서 검토하며, 해당 분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

< 27개 신산업 창업 분야 >

인공지능	스마트제조	드론·개인이동수단	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
빅데이터	시스템반도체	미래형 선박	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
5G+	자율주행차	재난/안전	우주
블록체인	전기수소차	스마트시티	차세대 원전
서비스플랫폼	바이오	스마트홈	양자
실감형콘텐츠	의료기기	신재생에너지	사이버 보안
지능형 로봇	기능성 식품	이차전지	

- **요건①** : 팁스 R&D 사업의 ‘후속투자 유치’ 성공조건*을 달성하여 “성공” 판정을 받은 팁스 졸업기업

* 팁스 선정 후 후속 투자유치금이 최근 3년간 국내 VC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

- **요건②** : 후속투자 유치 외 틱스 R&D 성공조건을 달성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중 민간 후속투자*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

* 후속투자는 팁스 선정(협약체결)이후 실적만 인정

< '후속투자 유치' 외 팁스(TIPS) 성공 기준(5개 중 1개 이상 달성) >

- ① M&A성사 (10억원 이상) ② 기업공개 (IPO, 코넥스 포함)
- 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
- ④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
- ⑤ 팁스 과제 진행 후 신규고용 20명 이상

□ 신청 제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(기업)

< ① 조건 예외 대상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(기업)

< ② 조건 예외 대상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 (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

④ 중소벤처기업부 ‘팁스R&D’ 또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‘창업사업화 지원사업’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
※ 중단 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*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 「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'사업화' 및 '글로벌'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(붙임 31 참조)

** 동일년도 2개 이상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되는 경우, 각 사업의 협약 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

*** 단, 2024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
-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(기업)
- ⑥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 (기업)
- ⑦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 (기업)
 - 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- ⑧ 2024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- ⑨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(기업)
- ⑩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(기업)
- ⑪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-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(기업)

3

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

- 사업화자금 : 정부지원사업비 최대 5억원(평균 3.3억원) 지원
 - 사업화자금(정부지원사업비)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며, 사업 수행(협약)기간은 **협약일로부터 18개월**
 - * "아기유니콘 육성사업"에 참여했던 경우, 해당 사업으로 받은 정부지원사업비만큼 배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

<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 (정부지원사업비 3.5억원인 경우) >

총 사업비 (예시)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
		현금	현물
100%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10% 이상	총사업비의 20% 이하
5억원 (100%)	3.5억원 (70%)	5천만원 (10%)	1억원 (20%)

- * 총 사업비 = 정부지원사업비 70% 이하 + 자기부담사업비 30% 이상
- ** 자기부담사업비 (30% 이상) : 현금 10% 이상 + 현물 20% 이하
- **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

< 사업화 자금 비목 >

비 목	비목 정의
재료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
외주용역비	•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기계장치 (공구·기구, 비품, SW 등)	•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 관련 비용
인건비	•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(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) * 창업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
지급 수수료	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기자재임차비,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)
여비	•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
교육훈련비	•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
광고선전비	•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
4

신청 및 접수

□ 신청·접수 기간

○ 1차 : 2024. 3. 19.(화) ~ 4. 11.(목), 16:00까지

○ 2차 : 2024. 6. 3.(월) ~ 6. 27.(목), 16:00까지

*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, 2차 신청·접수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

< 유의 사항 >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누리집' 가입 및 사업 신청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(“제출완료”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)
- * 신청·접수는 **16:00 정각에 종료** (신규 신청 불가). 다만, 16:00 전에 1단계(약관동의)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, 18: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
- ② **‘제출완료’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**
- ③ **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**하고, 신청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 및 삭제 불가

□ 신청방법

-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·접수 (www.k-startup.go.kr)
 - 신청·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
 - * **실명인증**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,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)
 - ** **기업인증** : 공동인증서(기업용), 금융인증서, SCI기업실명인증,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
 - ***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www.k-startup.go.kr → 고객센터 → 온라인 매뉴얼 → 창업사업 매뉴얼 → '(창업자)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'에서 확인 가능

□ 제출서류

- 사업계획서 1부 ([별첨 2] 양식)
 - *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(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- 기타 제출서류 각 1부

< 제출서류 목록 >

제출서류	주의사항	제출방식
① (양식1) 사업계획서	PDF 형태 첨부	온라인시스템(K-startup) 업로드 ※사업계획서 외 다른 서류는 '회사명.zip' 으로 압축 후 제출 * 제출서류의 용량 합계는 최대 20MB 초과 불가
② (양식2) 신청 기본사항	온라인 입력	
③ (양식3) 참가신청서		
④ (양식4) 개인정보 제공·이용·수집동의서		
⑤ 투자계약서·투자금 납입내역		
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PDF	
⑦ 청렴서약서		
⑧ 주주명부		
⑨ 팁스 졸업 성공 공문		
⑩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		
⑪ 사업자등록증명원(신청기업 외 다른 '계속'사업자 보유 시)	창업기업 여부 확인용 (PDF)	
⑫ 휴·폐업사업사실증명원('휴·폐업'사업자 보유 시)		
⑬ 기타 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	가점 해당시 첨부 (PDF)	

- * 사업계획서 양식 : "[별첨2] 포스트팁스 사업계획서 서식" 참조
- **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하며,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
- ***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기존에 발급받은 '창업기업 확인서' 보유 시 해당 서류로 확인 대체 가능(단, 사업공고일 기준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어야 함)

□ 평가 절차 : 총 2단계 평가 (요건검토 → 발표)를 통해 최종 선정

*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, 평가 결과 등은 **선택한 주관기관**에서 안내 예정

- 요건검토(지원 대상 여부 등) 후 발표평가를 진행하는 2단계 평가로 평가 진행되며, 각 평가는 허들식 평가로 진행

<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(안) >



신청기업의 요건검토, 사업계획서 유사·중복성 검토는
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
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·협약 취소 처리 예정

* (전담기관) 창업진흥원, (주관기관) 한국과학기술연구원,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□ 평가 방법

- ① **요건검토**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, 가점* 등 검토

* 가점은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

- ② **발표평가** : 제품·서비스 개발 동기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,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(동 사업 신청자)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,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·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

* 발표평가 점수가 기준점수(60점)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- ③ **최종선정** : 선정규모 내에서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하고, 정부지원사업비*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

*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

□ 평가지표

- 창업 아이템의 제품·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< 발표평가 지표 주요 내용 >

평가항목	세부 내용
문제인식	•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(문제인식), 해결방안(필요성) 등
실행가능성	•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(개선)방법, 경쟁력 확보 방안 등
성장전략	•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, 자금조달 방안 등
팀(기업) 구성	•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(예정인)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

- 청년창업기업 1점, 전략 기술분야 1점,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에 대하여 최대 3점의 가점 부여

< 가점 항목 및 점수 >

가점 세부 항목	점수	비고
1) 청년창업기업 (기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, 공동·각자 대표는 1인이상)	1점	최대 3점
2) 전략 기술분야(소재·부품·장비, 10대 초격차 분야) [별첨3 참조]	1점	
3) 내일채움공제(플러스) 가입 기업	1점	

□ 사업 운영일정

※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

(3) 공통사항

1

선정자의 의무

□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 - *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(현금)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-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고,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◆ **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
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**

-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"형법", "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",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, "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"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, 창업기업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"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" 제32조, "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"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**해당자를 고발 조치** 할 수 있습니다.

□ **신청 시 유의사항**

-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
< 유의 사항 >

- ① 사업 신청은 **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**하여야 하며, **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**
- ② K-Startup 누리집 **신규 가입 시**, 아이폰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**본인 인증 필수**. **서울신용평가정보(SCI)**에 실명(개명)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K-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
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'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(협약체결) 불가. 단, '24년 전('23년까지)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
- * (주의)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,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
- 동 사업 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·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 등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(3년)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*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, 선정취소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- **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,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- *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는 '24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
- 선정자는 동 공고문,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, 세부관리기준, 전담기관,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전 평가 과정에 창업자(팀) 본인(대표), 창업기업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
- 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(통보일 기산, 휴일포함)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
-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자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」, 창업진흥원·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,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‘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’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·운영됨
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등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계좌) 개설 및 창업 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- * 지정 은행(신한은행)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
3

사업 신청 문의

□ 문의처

- (시스템 문의) 국번 없이 1357
- (사업 문의) 주관기관 및 통합콜센터

구 분		담당 기관	전화번호
프리팁스 (Pre-TIPS)	주관기관	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	02-3440-7421
	전담기관	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	(국번없이) 1357
포스트팁스 (Post-TIPS)	주관기관	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홍릉강소특구사업단	02-958-7284
		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협력팀	02-3017-7067
	전담기관	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	(국번없이) 1357
시스템 문의(기타)		중소기업 통합 콜센터	(국번없이) 1357
프로그램 홈페이지		www.jointips.or.kr / www.k-startup.go.kr	

붙임 1

창업 여부 기준표

신청기업구분	상세 구분			창업여부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	창업아님
		이종	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	창업아님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법인기업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동종창업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
	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
		이종창업	-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
	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
	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
		이종		창 업

- ※ **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**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- ※ **동종의 범위**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- ※ **과점주주**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- ※ **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** : ① 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는 창업기업으로 인정
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
- ②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는 창업기업으로 인정

붙임 2**지원 제외 대상 업종**

- 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.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붙임 3**2024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**

< 프리팁스 - 2024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>

연번	창업지원사업명	소관 부처
1	•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(팁스 창업사업화, 프리팁스(시드트랙))	중소벤처기업부
2	• 예비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3	• 초기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4	• 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	중소벤처기업부
5	• 아기유니콘 200 육성	중소벤처기업부
6	• 재도전성공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7	• 창업중심대학	중소벤처기업부
8	•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	중소벤처기업부
9	•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	중소벤처기업부
10	•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11	•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(DATA-Stars)	과학기술정보통신부
12	• 에코스타트업 지원	환경부
13	•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	환경부
14	• 물드림 사업화 지원	환경부
15	• 예술기업 성장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6	•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7	• 스포츠산업 창업중기 (엑셀러레이팅)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8	•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9	• 콘텐츠 초기창업 육성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0	• 콘텐츠 창업도약 프로그램	문화체육관광부
21	•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(콘텐츠 오픈이노베이션)	문화체육관광부
22	•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3	• 관광벤처사업 공모전	문화체육관광부
24	• 관광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	문화체육관광부
25	• 신사업창업사관학교	중소벤처기업부
26	• 농식품 벤처 육성지원	농림축산식품부
27	• 창업성공패키지(글로벌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28	•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	중소벤처기업부

< 포스트팁스 - 2024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>

연번	창업지원사업명	소관 부처
1	•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(팁스 창업사업화, 프리팁스)	중소벤처기업부
2	• 예비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3	• 초기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4	• 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	중소벤처기업부
5	• 아기유니콘 200 육성	중소벤처기업부
6	• 재도전성공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7	• 창업중심대학	중소벤처기업부
8	•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	중소벤처기업부
9	•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	중소벤처기업부
10	•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11	•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(DATA-Stars)	과학기술정보통신부
12	• 에코스타트업 지원	환경부
13	•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	환경부
14	• 물드림 사업화 지원	환경부
15	• 예술기업 성장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6	•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7	• 스포츠산업 창업중기 (엑셀러레이팅)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8	•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9	• 콘텐츠 초기창업 육성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0	• 콘텐츠 창업도약 프로그램	문화체육관광부
21	•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(콘텐츠 오픈이노베이션)	문화체육관광부
22	•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3	• 관광벤처사업 공모전	문화체육관광부
24	• 관광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	문화체육관광부
25	• 신사업창업사관학교	중소벤처기업부
26	• 농식품 벤처 육성지원	농림축산식품부
27	• 창업성공패키지(글로벌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28	•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	중소벤처기업부